

# 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1992. 5. 8

산업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2. 4. 28

· 회부일자 : 1992. 4. 29

다. 상정일자 : 제 78회 임시회

· 제 2차 산업위원회 ( 1992. 5. 7 ) 상정, 의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 제안설명자 : 농산물원종장장 오 학 영 )

가. 제안이유

- 연구기관이 아닌 단순한 종자 생산보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 원종장장의 정원이 단일 직열 (지방농업연구원)로 되어있어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지난하고
- 타도에서 87년도 (경기도는 89년도)에 장장의 정원을 지방농업기정 또는 지방농업연구원으로 복수직화 하였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상의 정원에도 복수직으로 되어있어 도간 형평유지 및 정원규칙과의 일치도모 필요

나. 주요골자

- 농산물 원종장장의 정원을  
" 지방농업연구원(4급) " 에서 " 지방농업기정 또는 지방농업연구원(4급) " 으로 조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 전문위원 허 회 )

-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아닌 단순한 종자생산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 원종장장의 정원이 지방농업연구원이란 단일 직렬로 되어있어 인사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있지 못하며
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상 복수직 (지방농업기정, 지방농업연구원)으로 되어있어 타도에서도 이미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여 오고 있음과 관련하여
-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인사관리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타도와의 형평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 없음 "

5. 토론요지 : " 없음 "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" 없음 "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 없음 "

## 9. 심사보고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 농산물 원종장 조례중 개정조례 (안) 1부.

나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